프랑스 전동킥보드 운행 관련 법 규정 내용

프랑스에서 전동킥보드의 도심운행과 관련하여 운행자 안전수칙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규정이 신규 제정되어(2019.10.23)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함

1 법제화 추진배경

□ 이용객의 폭발적 증가 - '19년 47만 9천대(전년대비 105% 증가)

○ 전동킥보드 이용에 유리한 사회적 환경 조성

- 대중교통 파업('19.12~'20.01)으로 개인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COVID 19로 지하철·버스대신 비접촉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누림.

○ 전동킥보드 구매 가격 하락

- 충전 배터리 및 핵심장치의 지속적 기술 혁신으로 구매가격이 하락함. (평균 구매가 '16년 767유로 ⇒ '19년 399유로)

○ 공유임대 서비스 증가

- 대도시를 중심으로 Free-Floating(어플을 이용한 무인 공유임대) 서비스가 급증하였고 특히, 파리시는 저공해 교통수요 확대를 위해 킥보드 임대사업자의 서비스 참여를 환영하는 추세였음

※ 파리 지역 12개 임대회사 총 2만여대 제공, 프랑스 전국 4만여대 제공('19.06 기준)

□ 빈번한 사고와 무질서

○ 전동킥보드의 무질서한 인도 방치로 보행자 통행불편이 증가하였고 파리시의 경우 하루 40여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각종 민사소송이 제기됨.

<주요 안전사고 발생사례>

[사례 1] 파리시청 상대 민사소송 제기('19.01)
- 임대 킥보드 이용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으나 킥보드 회사의 보험가입 정도가 충분치 못하여 사고 피해자가 보험 여부를 점검치 않고 서비스 운영을 허용한 사유로 파리시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

[사례 2] 파리 국립오페라 피아니스트 보행 사고('19.05)
- 파리 국립오페라 피아니스트가 보행 중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오른팔과 손에 중상을 입어 피아니스트 활동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소식이 기사화

[사례 3] 파리 최초 킥보드 사망사고('19.06)
-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와 트럭이 부딪쳐 킥보드를 타고 있던 청년이 사망

2 법제화 추진경위

□ 파리시 관련조례 제정('19.7월)

○ 파리시는 조례제정을 통해 인도운행 및 주차 금지, 속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 안전규정을 수립 시행함('19.7.1 시행)

<조례 주요내용>

① 인도 운행 금지 - 적발 시 135유로 범칙금 부과
② 인도 주차 금지 - 차량 및 2륜차 주차공간에 한해 주차 가능
③ 운행 속도 제한 - 기계조작 통해 최대 시속을 20km로 제한
④ 기타 안전 수칙 - 헬멧 착용 권장, 2인 탑승 금지, 공원내 운행 금지

□ 프랑스 정부 관련 법규 개정('19.10월)

○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9.10.23. 공표와 함께 시행됨.

※ 정부입법(교통부)인 행정명령(Décret) 형식

3 관련 규정 내용

□ 주요 내용

○ “EDPM” 이라는 새로운 범주의 교통수단을 인정

- EDPM에는 전동 킥보드(trotinettes électriques), 외발전동휠(monoroues), 세그웨이(segway), 호버보드(hoverboard) 등을 포괄함

※ EDPM : 원동기 장착 개인 이동 장치(engins de déplacement personnel motorisés)

○ EDPM 안전이용 기본 규칙 마련

- 운행 및 주차 관련 규정, EPDM의 기술제원 및 보조장구 관련 규정, 규정 위반 시 벌칙 조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.

□ 세부 내용

○ 안전 운행 기본 원칙

- 음주자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자 운행 금지
- 만 12세 미만 아동 운행 금지 및 1인 이상 탑승 금지
- 음향 장비 이용 금지(헤드폰·이어폰 착용 금지, 휴대전화 이용 금지)
- 이용자는 책임보험에 의무가입

○ 운행 및 주·정차 공간 관련 규정

- 인도 위 운행금지 및 2륜차 지정 주차공간에 주차 원칙
- 도심 내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운행 원칙. 다만, 자전거 노선 표시가 없는 도로에서는 허용 최대시속 50km/h 미만인 차도에서 운행 가능
- 도심을 벗어난 외곽도로에서는 운행 금지

○ 보호장구 관련 규정

- 안전헬멧 착용 권장(의무사항은 아님)
- 야간 및 시계가 안좋은 주간에 형광 보호장구 착용 의무
- 도심운행시 기계조작을 통해 최대시속 25km/h로 속도 제한

○ **EDPM 장비 관련 규정**(‘20.7.1 발효)

- 전동장치 전방과 후방에 차폭등 설치의무
- 전동장치 후미 측면부에 반사식 경광등(자전거와 유사) 설치의무
- 기계식 제동장치(브레이크)와 경적(크락션) 설치의무



○ **벌칙규정**

- 안전운행 기본규칙 위반(1인 추가탑승 등) 시 범칙금 35유로
- 허가없이 인도 운행 시 및 전동장치 기계조작 위반 시 범칙금 135유로
- 허용 최대 속도 25km/h 초과 시 범칙금 1,500유로

4 정책 제언

○ **국내의 경우 ‘20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.**

- 13세 이상 이용 가능, 별도면허 불필요, 차도 및 자전거 도로 이용 가능

○ **향후 이용의 편의성과 재미 등을 고려할 때 이용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안전사고 또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.**

○ **따라서 프랑스 사례를 참고하여 전동킥보드 이용관련 안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**

(※ 현재 전국 10여개 업체에서 2만여대 운영 중)

【별첨 1】 파리시 전동킥보드 공유임대 서비스 주요내용

○ **공유임대 서비스 운영 조건 강화**

- 모든 이용자 민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⇒ 서비스 제공업체의 보험이 포함된 서비스 제공(전국)
- 보행자 안전 및 통행조건 보장 ⇒ 인도 운행 금지(전국) 및 인도 주차 금지(파리 등 대도시)
- 공공 공간 점유세 부과(지자체 재량) ⇒ 파리시 부과 예정

○ **파리시 운영 방식 결정** : 공개입찰을 통한 3개 민간기업 선정 후 운영권 부여 계획

- 공공서비스가 아닌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교통수단으로 간주
- 자유방임형 영업허가로 초래할 수 있는 무질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대수를 제한하고 엄격한 운영 조건을 부과하여 도심 교통안전 도모

  ※ '20년 6월부터 회사당 5,000대씩 총 15,000대 운행허가 방침

○ **공개입찰 응찰 현황** : 18개사 응찰

- 파리진출 기존 운영 기업 : Lime(미국), Bird(미국), Tier(독일) 등
- 대체교통수단 전문 기업 : Jump(미국), Bolt(미국), Wind(독일) 등
- 신흥 스타트업 : Dott(프랑스), VOI(스웨덴), Pony(프랑스)
- 자동차 기업 : BMW & Daimler(FreeNow), Ford(Spin) 등

【별첨 2】 EDPM 모습



(외발전동휠)



(세그웨이)



(호버보드)



(전동킥보드)